

의안번호	2204140
의 퇴 인	강선영의원
회 답 일	2024.10.18.
추 계 번호	24D2183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32조의2 (군수품·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「군수품관리법」,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에도 불구하고 군수품,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·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음(제1항)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「국유재산법」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음.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음(제2항) 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에도 불구하고 그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음.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2조의2 (군수품·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군수품·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(안 제32조의2)
 - 현행법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·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품, 국유재산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사용허가·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,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,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 - 개정안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, 공유재산의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이 무상으로 사용할 공유시설 내역 및 사용료 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함
 - 또한,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후, 축조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도록 할 경우에도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국방기술품질원이 영구시설물 축조계획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도록 할 시기와 비용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, 이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- 이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